

 국토교통부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6. 16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 건축안전과	담당자	·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사무관 이지형, 주무관 노운용, 주무관 정연수 · ☎ (044) 201-4986, 4985, 4986, 4991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등으로 광주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기대

- 건축물관리법 개정안, 6월 15일 법안소위 통과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6.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『건축물관리법』 개정안(허영의원 대표발의, '21.2.2.)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에 따라,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여,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,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되었다.
 -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·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,
 - 해체 난이도,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.

- 또한,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.
 -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, 해체 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.
 -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,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
 - ※ (현행)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감리를 지정(지정 감리제도)하고 업체가 계약
- 이번 『건축물관리법』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,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,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”되었다면서,
 - 이달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에 대해서도 “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,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·이지형 사무관(☎ 044-201-4989, 044-201-49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